

의 결



국민권익위원회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제2020 - 441호

의 안 명 육아 편의시설의 합리적 개선

대상기관 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, 지방자치단체

의 결 일 2020. 9. 21.

주 문

「육아 편의시설의 합리적 개선」 방안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, 행정안전부,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0년 9월 21일

위 원 권 태 성

위 원 김 기 표

위 원 김 태 응

위 원 김 의 환

위 원 강 재 영

위 원 정 정 미

위 원 오 완 호

위 원 이 근 동

위 원 박 흥 규

위 원 임 혜 자

위 원 임 성 문

위 원 방 이 엽

위 원 손 난 주

<별 지>

대한민국헌법 제119조
보다 나은 **국민권익위원회**

육아 편의시설의 합리적 개선

2020. 9.



국민권익위원회

|| 목 차 ||

I. 추진 배경 및 경과	1
II. 제도 현황	2
III. 실태 및 문제점	5
1. 육아관련 ‘설치 의무시설’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점검 미비 ..	5
2. 안내 표시 미비로 이용자 접근성 불편	7
3. 정기적인 위생·안전 점검 미흡	10
4. 수유시설 내 공간 분리 기준 불명확	15
IV. 개선방안	16
1. ‘설치 의무시설’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점검 방안 마련 ·	16
2. 이용자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표시 강화	17
3. 정기적인 위생·안전 점검 방안 마련	18
4. 수유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공간 분리 기준 명확화	19
V.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	21
[참고] 관련 법령 등	22

I. 추진배경 및 경과

- ❖ 추진 근거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- ❖ 국정과제 48 :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

□ 추진배경

-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*은 0.92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,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

*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

-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가정에서만 양육이 힘들어짐에 따라, 사회전반에 육아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제도 등의 보완 필요

※ 맞벌이 가구 수 : ('15) 5,358 → ('16) 5,545 → ('17) 5,456 → ('18) 5,675(단위: 천가구)

- 하지만 여전히 공공장소에서의 육아를 위한 편의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부족해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환경

※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 : ('18) 281 → ('19) 334 → ('20.8) 167

- 공중화장실에 갔더니 기저귀교환대의 모서리 부분은 때가 타 있었고 안전띠 연결 부분은 녹슬어 있었다. 위생 시트도 없어서 급한 대로 아이를 세워놓고 기저귀를 교체하려다 큰일 날 뻔했다.(‘19.1월, 언론보도)

- 이에, 영유아 보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유시설·기저귀 교환대 등 육아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

□ 추진경과

-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: 5 ~ 7월
- 관계기관 협의 : 8월
- 위원회 상정 및 권고 : 9월

II. 제도 현황

□ 수유시설 개요

- (설치근거)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장애인등편의법), 「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」(이하 교통약자법), 「모자보건법」에 설치를 규정
 - 「장애인등편의법」은 일반 다중이용시설 내의 설치를 규정하고, 여객시설에 대한 설치는 「교통약자법」에 별도로 규정
 - 「모자보건법」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,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
 - ※ 수유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은 '수유시설 표준 관리 가이드라인'을 통해 안내
- (설치대상)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을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 또는 권장 설치하도록 하고, 그 휴게시설 내에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도록 규정
 - '설치 의무시설'에는 공연장 및 관람장, 전시장, 동·식물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이 포함
 - ※ 「장애인등편의법」 제8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, 시행령 제4조(편의시설의 종류)
 - 관련 규정 개정('18.1.)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, 이후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(용도변경 포함) 시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
 - ※ 「장애인등편의법」 제9조(시설주등의 의무)

의무	권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연장 및 관람장(1천 제곱미터 이상) · 전시장, 동·식물원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· 휴게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교집회장 · 도매시장·소매시장·상점 · 학교, 유치원 · 도서관 · 아동관련시설 등

- **(관리주체)**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도록 규정하고,
 -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, 교육감 등이 하도록 명시
 - ※ 「장애인등편의법」 제10조(편의시설에 관한 지도·감독)

- **(설치현황)**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 실시
 - ※ 「장애인등편의법」 제11조(실태조사), 「교통약자법」 제25조(실태조사)
 - 하지만, 「장애인등편의법」에 따른 임산부를 위한 휴게시설 의무설치 현황은 관련 법 시행('18.1.) 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태조사 미실시
 - ※ 매년 하는 실태조사(표본 또는 전수)는 미실시, 실태조사(전수)는 기한(5년) 미도래
 - 「교통약자법」에 따른 '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'은 2018년에 실태조사(표본조사)를 하였으며, 설치 의무시설 중 12.5%가 미설치

< 임산부 휴게시설 현황 >

■ **여객시설별 임산부 휴게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**

(단위 : %)

구분	조사대상(곳)	기준적합	기준미적합	미설치
여객시설	440	85.3	2.2	12.5
여객자동차 터미널	75	61.8	4.8	33.4
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역사	247	88.5	1.6	9.9
철도역사	96	86.7	3.6	9.7
공항여객터미널	9	100.0	0.0	0.0
여객선터미널	13	85.3	4.0	10.7

※ 위 표의 비율은 임산부 휴게시설에 대한 세부항목별 조사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표 상의 조사대상수에 대한 비율로는 맞지 않을 수 있음

출처: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(국토교통부)

□ 기저귀교환대 개요

- (설치근거·대상)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공중화장실법) 상 고속도로 휴게시설, 철도의 역, 도시철도의 역, 공항시설과 공공업무 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**남녀화장실에 각각 설치하도록 규정**
 - ※ 화장실 외에 남성 또는 여성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의무 면제(「공중화장실법 시행령」 별표)
- 관련 법령 개정(17.11.) 이전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하여 그 허가·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
 - ※ 「공중화장실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8439호) 부칙 제2조

【기저귀교환대 설치대상】

-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
-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
-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
-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*,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**,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***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

* 공연장(500 제곱미터 이상), 집회장(500 제곱미터 이상), 관람장(1천 제곱미터 이상), 전시장, 동·식물원

** 도서관(500 제곱미터 이상)

*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, 외국공관의 건축물(1천 제곱미터 이상)

- (관리주체)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를 포함해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따른 유지·관리에 대한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규정
 -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고, 설치·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
 - ※ 「공중화장실법」 제12조(시설 점검), 제13조(개선명령 등)
- (설치현황) 행정안전부나 자치단체 등이 「공중화장실법」에 따른 설치 의무시설에 대해 설치현황을 파악한 것은 없음
 - 다만, 전국 자치단체 228개를 대상으로 ‘기저귀교환대 설치현황 파악 여부’를 조사한 결과 135개 지자체만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
 - ※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설치 현황 및 관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(20.6. 권익위)

Ⅲ. 실태 및 문제점

1 육아관련 '설치 의무시설'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점검 미비

수유시설

- 수유시설 등 임신부 휴게시설 의무설치 관련법이 개정·시행('18.1.) 되었으나, 의무시설에 대한 설치 여부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아 설치 현황 관리가 미흡한 실정
 - 현재 수유시설 관련 현황은 인구보건복지협회*가 운영 중인 '수유시설 검색 사이트(www.sooyusil.com)'에 등록된 것이 유일
 - 하지만, 실제 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보건소 등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설치현황은 파악하기 곤란
- * 인구보건복지협회: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위탁수행하는 단체
- ※ 「장애인등편의법」에 따라 5년에 한 번 편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2018년 전수조사 시에는 임신부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음. 보건복지부는 임신부가 포함된 실태조사는 2023년에 진행한다는 입장
- 이로 인해 공공기관 등 '설치 의무시설'인 경우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
 - 또한, 편의시설 설치·운영의 업무 총괄 및 필요한 지도와 감독, 실태조사 결과 공표,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업무도 미흡

- 주민센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기들도 여러 가지 용무로 함께 이용함. 하지만 공공기관에 수유실은커녕 기저귀교환대조차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됨. 아이들을 위해 공공기관과 주민센터에 꼭 수유실과 기저귀교환대가 있어야 함('19.6월, 국민신문고)
- ○○시청에 갔는데 수유실이 없었음. 거기에 민원동, 본관, 별관 1층 여자화장실을 다 돌아다녔는데 어디에도 기저귀교환대, 화장실 영유아거치대가 없었음. 수유실, 기저귀교환대, 화장실 아기의자 정도는 시청에 있어야 할 것 같음('19.2월, 국민신문고)

기저귀교환대

-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또한 ‘설치 의무시설’ 중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
 -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별 기저귀교환대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향후 공개예정이나, 의무시설에 대한 설치현황 조사는 미 실시
- 실태조사 결과, 대다수 자치단체가 소관 공중화장실별 기저귀교환대 설치여부만 파악하고, 의무시설에 설치되었는지는 파악하지 않음
-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현황 관리가 되지 않아 의무시설임에도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

- 도서관에 들러 책을 대여하고 나오는 길에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화장실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저귀교환대가 없었음. 수유실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기저귀교환대는 마련해 주길 바람(20.1월, 국민신문고)
- ○○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였는데 아기가 대변을 보아 기저귀를 급히 갈고자 하였으나 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없어 갈지 못했음. 공공기관으로서 필수 시설물 설치가 안 된 것 아닌지 의문이 듦(19.6월, 국민신문고)

<참고> 현재 공중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설치 현황 자료

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 현황				OO군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현황										
화장실명	위치	시설구분	기저귀 교환대 유무	설치				미설치						
				남	여	다목적	계	남	여	다목적	계			
		공공화장실	X	2	1	3	1	47	37	84	1			
		공공화장실	X				0	1	1					
		공공화장실	X		1		1	1		1				
		공공화장실	X				0	1	1					
		공공화장실	X				0	1	1		1			
		공공화장실	X				0	1	1					
		공공화장실	X				0	1	1					
		공공화장실	X				0	1	1					
		공공화장실	X		1		2	1	1					
		공공화장실	X				0	1	1					
		관공차	X		1	1	2	1						
		관공차	X		1		1	1			1			
		관공차	X				0	1	1					
		차역공원	X				0	1	1					
		도시공원	X				0	1	1					
		도시공원	X				0	1	1					
		도시공원	X				0	1	1					
		휴게소	X				0	1	1					
		휴게소	X				0	1	1					
		업무시설	X				0	1	1					
		업무시설	X				0	1	1					
		업무시설	X		1		1	1		1				

< ○○시 - 기저귀교환대 설치 유무만 표시 >

< ○○군 - 남녀화장실 별 설치 개수만 표시 >

2

안내 표시 미비로 이용자 접근성 불편

수유시설

- 시설 내에 수유시설이 있더라도 위치가 제각각이고 이용자들이 찾기 어려운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안내 표시는 부족
 - 실태조사 결과, 공공기관인 시청 및 유아 동반 방문객이 많은 동물원 등에도 출입구 종합안내도, 층별 안내도 등에 수유시설의 위치 안내가 없는 경우가 다수
 - 또한, 건물 1층 안내도에 수유시설 위치를 표시하고 있더라도 건물 내부에서 직관적으로 위치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‘시각적인 고려’를 한 곳은 ‘철도역’ 등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
- 이와 같이 상당수 시설에서 수유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 표시 등이 부족해 민원을 야기
 - 이용자가 필요할 때 수유시설을 이용하고자 해도 찾기가 어려워 안내도를 찾아 출입구 등으로 가거나, 직원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는 불편 초래

- ○○산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유실이 있는지 찾아보려 했으나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, 공원 내 안내표지판에서 수유실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아쉬움(20.6월, 국민신문고)
- ○○교통공사는 공식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유실 유무와 위치를 안내하고 있지만, 범례의 크기가 작아 알아보기 어렵고 수유실이 후미진 곳에 위치한 경우도 많았다. 직장인 강모씨는 “수유실 위치에 대한 눈에 띄는 표기나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”고 했다.(19.4월, 언론보도)

< 권익위 실태조사('20.7월) >

구분	현황	사진
○○시청	<p>[현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층 여직원휴게실에 수유실 위치 수유실 위치 안내는 민원실 내부에만 표시 <p>[문제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물 로비에 수유실 위치 안내표시가 없고, 6층 안내도에도 여직원휴게실만 표시되어 있어 수유실을 찾기 어려움 	
○○동물원	<p>[현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물원 휴게소 내부에 수유실 위치 동물원 입구 종합안내도 및 방향안내판 모두 수유실 위치는 표시하고 있지 않음 <p>[문제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동물원 내부에 수유실 위치 안내표시가 별도로 없으며, 휴게실 내부 안쪽에 있는 수유실의 위쪽 벽에 큰 현수막이 있어 수유실 표지판이 눈에 띄지 않음 	
○○한옥마을	<p>[현황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옥마을 주변 관광안내소, 전시관에 수유실 위치 거리 곳곳에 있는 안내지도 및 입구에 있는 안내도에도 수유실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<p>[문제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넓은 실외지역에 별도의 안내가 없어 이용자가 수유실을 찾기 어려움 	
○○역	<p>[현황] * 잘 된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층 계단 뒤에 수유실 위치 역 이용안내도에 수유실 위치, 방향, 거리를 표시하고, 그 외에도 안내 다수 존재 출입문에 수유실 남성 출입가능 여부,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이용안내문을 부착하고 담당자 연락처를 게시하여 운영 	
○○역	<p>[현황] * 잘 된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층 대합실 편의점 옆 유동인구가 많고,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수유실 위치 수유실 출입 시 호출벨을 사용하도록 하고, 이용안내문을 부착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 	

기저귀교환대

- 대부분 시설에서 공중화장실 내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어도 외부에 별도 안내 표시가 없어 외부에서 확인 곤란
 - 장애인 사용 가능 화장실의 경우에는 안내 표시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영유아를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내가 부족한 실정
 - 실제 현장 확인 결과 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를 외부에 표시해 놓은 곳은 거의 없고, 방향 등 위치 안내를 표시한 곳은 더욱 찾기 어려웠음
 - 결과적으로 이용자가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는 직접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 초래

< 권익위 실태조사('20.6~7월) >

구분	현황	사진
번화가 공중화장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화장실 내부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외부에는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대한 별도의 표시가 없음 	
○○한옥마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화장실 외부에 기저귀교환대 설치표시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 안으로 들어가야 확인 가능 	
○○도서관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잘 된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남녀화장실 모두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고, 화장실 내부에 기저귀교환대, 영유아용 보호의자가 설치되어 있음을 외부에 표시 	
○○도서관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잘 된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층 로비에서 보이는 곳에 화장실 위치, 방향을 안내하고, 화장실 내부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음을 표시 	

3 정기적인 위생·안전 점검 미흡

수유시설

□ 부실한 관리·점검 규정

- 수유시설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음
 - 다만, 보건복지부는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화된 기준인 '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'을 발행·제공하여 관리 유도
 - 동 가이드라인은 수유시설의 공간 구성, 비치물품 및 환경 관리 기준, 수유시설 운영 및 이용에 대한 수칙 등을 포함 <참고3 참조>
- 설치·운영 중인 수유시설의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3을 근거로 연 1회 수유시설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
 - 다만, 실태조사는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에 등록된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,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*의 적정 관리여부는 확인 불가
- * 사이트에는 외부인이 사용가능한 수유시설 중 보건소가 파악하고 있거나,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물품지원을 한 곳을 위주로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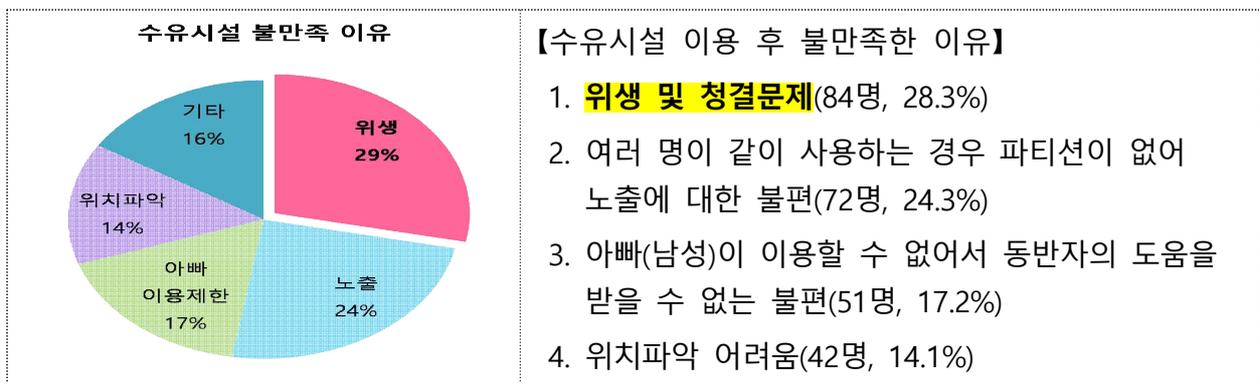
< 모자보건법 관련법령 >

- 제10조의3(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·홍보·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③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,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청결여부 점검·관리 미흡

- 2019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수유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, 조사대상 시설 2,841개 중 41개는 시설 개방 시만 관리하거나 평균 주 1~4회 정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
- 이용자가 수유시설의 청결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를 비치하고 있는 곳은 1,117개(39.3%)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
- 또한, 수유시설 관련 설문조사 결과 가장 불만족해 하는 분야도 '위생 및 청결문제'를 들고 있고, 관련 민원도 꾸준히 발생

<국민생각함 조사결과(총 296명 응답, '19.12월)>



- 수유실 문을 열자 불은 꺼져있었고 수유실인지 청소도구 정리소인지 알 수가 없었음. 언제부터 쌓여있었던 건지 모를 기저귀들이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음('20.5월, 국민신문고)
- 청소는 하는 건지 기저귀갈이대 위에 벌레며 바닥에 먼지는 기본임. 수유 의자라고 있는 소파는 앉으면 달라붙고 등도 갈라졌음. 수유실을 항상 청결히 유지해야 함('20.1월, 국민신문고)
- ○○역 수유실 내의 정수기와 소파 그리고 기저귀교환대를 조사한 결과, 정수기 버튼의 오염도는 최대 13,476RLU(오염도를 측정하는 단위), 소파는 8,952RLU, 기저귀교환대는 2,877RLU로 나타나 인근 화장실의 변기 951RLU와 비교했을 때 3배에서 14배가량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. 수치가 높을수록 세균 오염도가 높은 것을 의미('17.10월, 언론보도)

- 수유시설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곳으로 청결상태를 더욱 신경 써야하는 곳임에도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관리 여부에 대한 신뢰 저하
- 대부분 시설이 관리 점검표를 부착해 놓지 않아 사용자가 점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부재
- ※ 공공기관인 구청, 다중이용시설인 동물원, 박물관 모두 수유시설 내부에 관리 점검표 미부착

< 권익위 실태조사('20.6~7월) >

구분	현황	사진
○○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리 점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	
○○동물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리 점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	
○○박물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관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점검표가 수유실 내부에 부착되어 있지 않음 	
대형마트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잘 된 사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유실 내부에 점검표를 부착해두고 하루 3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, 이용안내문을 부착해 수유실 용도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안내 	

기저귀교환대

- 「공중화장실법」 제12조에 화장실 내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점검 규정은 다소 미흡
 - ※ 공중화장실 청결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(「공중화장실법」 제8조) 별도의 점검 규정은 없고, 안전에 대한 점검 규정도 부재
- 2017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기저귀교환대 안전실태 조사 결과, 이용경험자 대부분(500명 중 432명, 86.4%)이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답변
- 또한, 조사대상 30개 중 10개의 벨트와 버클의 상태가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도 증가
 - ※ 실제 기저귀교환대에서 아이의 상해사고가 발생한 사례 대부분(32명 중 24명, 75%)이 벨트를 채우지 않은 경우 발생

【다중이용시설 기저귀교환대 안전실태조사】('17.12월 한국소비자원)

■ 기저귀교환대 위생불량 여부

구분	예	아니오	합계
빈도(비율)	432명(86.4%)	68명(13.6%)	500명(100.0%)

■ 설치된 기저귀교환대 이용이 꺼려지는 이유(중복응답, 415명 대상)

순위	구분	빈도(명)	비율(%)
1	기저귀교환대가 더럽거나 더러울 거 같아서	363	87.5
2	일회용 위생시트가 갖춰 있지 않아서	190	45.8

■ 기저귀교환대 이용 시 불편사항(중복응답)

순위	구분	빈도(명)	비율(%)
1	기저귀교환대가 더러움	329	65.8
2	일회용 위생시트나 물티슈 등 기저귀교환대를 닦을 만한 것이 주변에 없음	247	49.4

■ 기저귀교환대 개선사항(중복응답)

순위	구분	빈도(명)	비율(%)
1	위생·청결관리를 신경 써야한다	197	39.4
2	다양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	76	15.2

- 실태조사 결과, 대부분 기저귀교환대 점검은 설치여부만 확인하고, 위생이나 안전 관련 점검은 없는 실정
- 일부 기저귀교환대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, 옆에 대걸레, 물걸레 등 청소도구를 두는 등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실제 사용이 불가능
- 또한, 출입문 옆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사용하기가 불편 할 것으로 보이는 곳도 존재

< 권익위 실태조사('20.6월) >

구분	현황	사진
○○구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출입문 앞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 실제 사용하기가 번거로움 ■ 곳곳에 검은 얼룩들이 묻어 있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음 ■ 버클 부분에 녹이 슬어 있음 	
공원 공중화장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애인용 화장실 칸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■ 기저귀교환대 옆에 대걸레, 물걸레 등 청소도구를 두어 사용하기 어려움 ■ 기저귀교환대 내부에도 벌레퇴치 스프레이, 비닐 등을 놓고 전혀 관리되지 않는 상태 	

4

수유시설 내 공간 분리 기준 불명확

-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어 아빠도 이용 가능한 가족 수유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

※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(상반기) : ('18) 16.9% → ('19) 20.7% → ('20) 24.7%

- 하지만, 모유수유를 위한 공간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어 모유수유를 목적으로 수유실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불편 초래
- 여성들만 사용 가능한 모유수유실의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와 편안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티션 등 가림막이 필요

- ○○시 모든 수유실 입구에는 여성전용공간이라고만 적혀있고 남자 출입 금지라고 적혀 있음. 전체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에서 여성만 들어갈 수 있는 수유실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는게 좋을 거 같음('18.11월, 국민신문고)
- 국립○○과학관 수유실은 공간도 넓고 쾌적하지만 커튼도 없고 가림막도 없어서 불편함. 파티션이든 뭐든 설치를 해서 수유하는 엄마들을 배려해주기를 바람('19.8월, 국민신문고)

- 사용빈도가 낮은 수유실을 휴게실, 창고 등 다른 용도를 겸해 사용하여 실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곳도 존재

- 이용자들에게는 용도 외 사용을 삼갈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, 정작 수유시설 관리수칙 등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자가 다른 용도를 겸해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

<참고>

【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】

수유시설 이용자 기본수칙

- 가. 본 시설은 수유를 위한 아기와 보호자 출입 시설로, 고유 목적 외의 이용을 삼가도록 하고, 일반인은 출입을 금지

- 국립○○병원의 모유수유실을 가보니 모유수유실이라고 해놓고 직원들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잠자는 휴게실로 이용하고 있음. 모유수유실이라고 적어놓고 이용 못하게 하는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('20.1월, 국민신문고)

IV. 개선방안

1 '설치 의무시설'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점검 방안 마련

○ 수유시설 '설치 의무시설'에 대한 설치여부 점검·조사를 실시하고, 미설치 시설에 대한 독려·홍보·교육·공표 방안 마련, 시행

- 수유시설 설치율이 일정 비율이상으로 안정될 때까지는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조사를 1년 주기로 실시하는 등 의무설치 시설에 대한 설치율 제고 방안 마련

※ 「장애인등편의법」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하도록 규정

- 또한,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유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

※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계획 작성 시 미설치 기관에 대한 설치 독려방안 등 포함

⇒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계획 작성지침 등에 반영

○ 공중화장실 시설·관리실태 점검 시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대상 여부 및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

- 설치 의무시설 중 현재 설치 비율 등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

※ 기저귀교환대 설치 유무 점검 시 설치 의무시설 여부도 함께 점검하여 결과 공개

<예시>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제공항목 및 속성정보(안)

NO	제공항목			속성정보		예시
	항목명	필수 선택	설명	허용데이터	표현형식/ 단위	
26	기저귀교환대장소	필수	기저귀교환대 설치 장소	남자화장실/여 자화장실/없음	text	남자화장실
27	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 <추가>	필수	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시설 여부	Y/N	의무 : Y 의무아님 : N	Y

⇒ 「공공데이터 개방 표준」 등에 반영

2 이용자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표시 강화

-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(1층 건물안내도 또는 층별 안내도 등)에 수유시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마련
 - 수유시설 위치 및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건물 내부에도 안내 표시

<예시> 수유시설 안내 표지



⇒ 「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」 등에 반영

- 공중화장실 외부에 영유아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교육자료 등에 반영

<예시> 기저귀교환대 설치 여부 안내 표지



⇒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자료 등에 반영

3

정기적인 위생·안전 점검 방안 마련

- 수유시설 관리 점검표를 시설 내에 비치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점검
 -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 추가

<예시>

【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】

제2장 수유시설 구성 및 관리기준

1. 비치물품 및 관리

다. 일반사항

- 수유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 점검표를 수유실 내에 비치하여 이용자도 수시로 청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 **수유실은 최소 1일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한다.<신설>**

⇒ 「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」에 반영

-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자료에 기저귀교환대 위생·안전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, 점검표에도 항목을 추가하여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

<예시> 공중화장실 점검표(안)

항목	점검내용	점검란	비고
대변기 및 주변			
소변기 및 주변			
⋮			
기저귀교환대	청결상태는 양호한가		
<추가>	벨트 등 시설이 파손, 고장난 부분이 없는가		
⋮			
손 건조기			
⋮			

⇒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자료, 공중화장실 점검표에 반영

4

수유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공간 분리 기준 명확화

□ 수유시설 내 남녀·개인 간 공간 구분을 위한 기준 마련

○ 단독 모유수유실 및 가족수유실 내 모유수유실 모두 잠금장치 또는 사용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기준 명확화

- 이용자 별 공간 분리가 가능하도록 파티션 등 가림막을 수유시설 내 필수·권장 물품에 추가

※ 시설이 협소하여 가림막을 비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에 사용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가 안심하고 수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

<예시>

【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】

제2장 수유시설 구성 및 관리기준

1. 공간구성

라. 일반사항

- 모유수유 공간(가족수유실 내 모유수유실을 포함한다)<추가>은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해 커튼 설치를 지양하며, 잠금장치가 있는 단독 공간으로 분리한다.

* 다만, 직장 여성 휴게실 내에 수유실이 설치된 경우 커튼 사용 가능

2. 비치물품 및 관리

가. 수유시설 용도에 따른 필수 및 권장물품

구분	용도	필수물품	권장물품
모유수유실	모유수유	소파, 테이블, 손소독제	세면대, 기저귀교환대, 수유쿠션, 온·습도계, <u>가림막(파티션 등)<추가></u>
가족수유실	수유, 이유식, 기저귀교환	소파, 테이블, 기저귀교환대, 손소독제, <u>가림막(파티션 등)<추가></u>	세면대, 수유쿠션, 전자레인지, 온·습도계
착유실	모유착유	소파, 테이블, 손소독제	세면대, 유축기, 냉장고, 소독기, 온·습도계

⇒ 「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」에 반영

□ 수유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

- 수유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, 부득이하게 다른 용도를 겸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내부에 수유실로만 사용 가능한 별도 공간을 분리하도록 명시

<예시>

【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】

제2장 수유시설 구성 및 관리기준

1. 공간구성

라. 일반사항

- 수유실은 수유를 위한 아기와 보호자 출입 시설로 사용하고, 다른 용도를 겸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. <신설>

* 다만, 부득이하게 다른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내부에 별도의 수유 공간 마련 <신설>

⇒ 「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」에 반영

V.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

□ 조치사항

과제구분	세부과제	관련기관
①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점검 방안 마련	○ 수유시설 설치 의무시설에 대한 설치여부 점검·조사 실시 및 미설치기관에 수유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☞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계획 작성지침 등에 반영	보건복지부
	○ 공중화장실 점검 시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 대상 여부 및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☞ 「공공데이터 개방 표준」 등에 반영	행정안전부
② 이용자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안내표시 강화	○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수유시설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침 등 마련 ☞ 「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」 등에 반영	보건복지부
	○ 공중화장실 외부에 기저귀교환대 설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교육자료 등에 반영 ☞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자료 등에 반영	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
③ 정기적인 위생·안전 점검 방안 마련	○ 수유시설 관리 점검표를 시설 내에 비치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점검·관리 ☞ 「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」에 반영	보건복지부
	○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자료에 기저귀교환대 위생·안전 관련 내용 추가 ☞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자료에 반영	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
	○ 공중화장실 점검표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·관리 ☞ 공중화장실 점검표에 반영	
④ 수유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공간 분리 기준 명확화	○ 수유시설 내 남녀·개인 간 공간 구분 기준 마련 - 모유수유실에 잠금장치 또는 사용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장치 부착 - 파티션 등 가림막을 수유시설 내 필수권장 물품에 추가 ☞ 「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」에 반영 ○ 수유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마련 ☞ 「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」에 반영	보건복지부

□ 조치기한: 2021년 3월(1번 과제는 2021년 9월)

【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장애인등"이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4. "시설주관기관"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교육감을 말한다.
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편의시설에 관한 지도·감독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실태조사)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2. 3.>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·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설치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보고)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
2. 대상시설의 건축·대수선(大修繕)·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
3.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-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13조(설치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

제14조의2(교육 실시)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【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 [별표 2]

가.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,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.

나.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-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

의무	권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연장 및 관람장(1천 제곱미터 이상) · 전시장, 등 · 식물원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· 휴게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교집회장 · 도매시장 · 소매시장 · 상점 · 학교, 유치원 · 교육원 · 직업훈련소 · 학원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· 도서관 · 아동관련시설 · 금융업소, 사무소, 신문사, 오피스텔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·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국민연금공단 · 한국장애인고용공단 ·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· 관광숙박시설 · 방송국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· 전신전화국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· 교도소 · 구치소 · 야외음악당, 야외극장, 어린이회관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· 장례식장

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】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교통약자"란 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,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,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7. "이동편의시설"이란 휠체어 탑승설비, 장애인용 승강기, 장애인을 위한 보도(步道),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,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.

제10조(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】 [별표 2]

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의 종류

- 임산부 휴게시설

: 여객시설(여객자동차 터미널, 철도 역사, 도시철도 역사, 환승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, 광역철도 역사)

참고2

기저귀교환대 관련 법령

【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】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의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·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, 휴식시설,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8조를 준용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(어린이용 대·소변기의 설치 등)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설 점검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·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·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.

제13조(개선명령 등)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가 제7조·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, 폐쇄명령,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6조(보조금의 지급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·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.

제19조(보고 등)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·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【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 [별표]

18.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**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**하여야 한다. ..(중략)..

가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

나.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

다.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

라.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

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*,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**,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***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

* 공연장(500 제곱미터 이상), 집회장(500 제곱미터 이상), 관람장(1천 제곱미터 이상), 전시장, 동·식물원

** 도서관(500 제곱미터 이상)

***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, 외국공관의 건축물(1천 제곱미터 이상)

참고3

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

① 수유시설 위치 및 바닥, 벽 등 내부 환경 구조물 소재 등 공간 구성에 대한 사항

- 바닥재는 오염물 제거가 용이하고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미끄럽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다.
- 내마모성, 내수성, 내진성, 내화성, 내방충성이 강하며, 방음이 잘되는 소재를 사용한다.
- 모유수유 공간은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해 커튼 설치를 지양하며, 잠금장치가 있는 단독 공간으로 분리한다.

② 수유시설 용도에 따른 필수 및 권장물품, 해당 물품의 관리 방법

구분	관리방법	시설구분	필요여부
소파/테이블	* 수유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1일 1회 이상, 깨끗한 천으로 닦아 청결하게 관리한다.	모유수유실	○
		가족수유실	○
		착유실	○
기저귀 교환대	* 기저귀 교체 시에 이용하며, 아기 피부가 직접 닿는 물품인데다 용도상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1일 1회 이상 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한다. * 이용 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벨트를 설치, 착용을 안내하도록 하며, 주기적으로 벨트 및 버클 상태를 체크한다.	모유수유실	△
		가족수유실	○
		착유실	×
손소독제	* 물 없이 손쉽게 손위생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품으로 항균효과가 보장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(알코올 함유량 최소 62% 이상)으로 비치한다. * 소독제의 유통기한 관리는 필수이며, 소독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개봉 후 6~12개월 단위로 교체하도록 한다.	모유수유실	○
		가족수유실	○
		착유실	○

③ 실내조명, 온습도, 환기, 소음, 청소 및 소독 등 수유시설 내부에 적합한 환경 관리 사항

- 계절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냉·난방 설비를 갖춘다.
- 실내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기를 자주 시키고 자연 환기가 어려울 경우 기계식 설비를 활용하여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하도록 한다.
- 바닥청소는 1일 1회 이용시간 종료 후 실시하며, 오염물 및 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기와 깨끗한 물걸레를 사용하여 청결을 유지한다.

④ 수유시설 운영 및 이용 기본 수칙

- 시설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용도에 따른 안내 표지판(모유수유실, 가족수유실, 착유실)을 부착하고 아빠 이용 가능 여부를 표시한다.
- 청결한 환경 관리를 위해 수유시설 내에 관리 점검표를 비치해두고 정기적으로 관리·작성한다.
-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수유시설 내 불법카메라 촬영 여부를 수시 점검한다.

수유시설 관리 점검표(시설비치용)

구분		점검내용	점검시간				
점검자							
공통	물품	의자(소파)/테이블					
		세면대					
		손소독제					
	환경	실내 온·습도					
		냄새/환기					
		실내 소독(주1회)					
	청소	쓰레기통 바닥					
모유/ 가족	물품	수유쿠션					
		기저귀교환대					
		전자레인지					
착유	물품	유축기					
		냉장고					
		유축기소독기					
기타	물품	공기청정기					
		냉·온 정수기					
		가습기/제습기					
		아기침대					
		보관함					
		풋스툴					
점검 후 조치사항							

※ 시설 구분 및 비치물품에 따라 점검내용 변경 가능

수유시설 실태조사 점검표

3) 수유시설 청결 점검표

구분	점검항목	평가점수	주요의견
공통	소파(의자) 청결상태		
	테이블 청결상태		
	거울 청결상태		
	세면대 청결상태		
	수유실 바닥 오염 정도 수유실 내 불쾌한 냄새 정도		
모유/가족	수유쿠션 청결상태		
	기저귀교환대 청결상태		
착유	냉장고 청결상태		
	유축기 청결상태		
	풋스툴 청결상태		
기타	보관함 청결상태		
	아기침대 청결상태		
	소독기 청결상태		
	전자레인지 관리상태		

【수유시설 실태조사 점검표 주요내용】

- 기관명, 수유실 면적, 기관·시설 구분, 이용현황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
- 수유실 위치 및 규모, 실내 적정 온도 및 습도, 소음 공간 및 환경 등에 관한 사항
- 소파, 테이블, 등 비치 물품에 대한 청결상태, 수유실 바닥 오염 정도, 냄새 등 청결 관련 사항
- 모유수유 공간 별도 칸막이, 의자 및 소파, 세면대, 관리 점검표 등 시설 및 비치물품 현황